

##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일 : 1999. 11. 1

개정일 : 2014. 11. 25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연구기관의 설립·운영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교 부설연구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제99조에서 규정하는 본교의 모든 부설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부설연구기관)** 본교 부설연구기관은 대학중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하며, 대학중점 연구소는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1. 8. 24, 2014. 11. 25>

### 제 2 장 설 립

**제4조(설립방법)** 연구소는 공모를 통하여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8. 24>

**제5조(설립절차)**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과제책임자(신청인 대표)는 지정기일 내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한다. 공모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심사 및 인터뷰, 3차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며, 1, 2차 심사는 연구기관 심사단이, 3차 심사는 총장이 실시한다. 1차 심사 평균점수와 2차 심사 평균점수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3차 심사에서 총장이 연구소를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11. 8. 24>

**제6조(신청서류)**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설립 계획서
2. 공동발의인의 연구업적서
3. 주요 연구분야
4. 사업계획서
5. 연구소 운영방안
6. 연구소 기구조직표
7. 연구소 규정(안)
8. 자체평가기준 <신설 2011. 8. 24>
9. 기타 증빙서류 <호 번호 변경 2011. 8. 24>

**제7조(연구기관 심사단)** ① 본교 부설연구기관의 설립, 통합, 폐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연구기관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기관 심사단은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총장이 추천하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개정 2011. 8. 24>

③ 심사단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단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 3 장 기 구

제 1 절 연구소

**제8조(연구소의 조직)** 연구소 운영 목적에 따라 연구소에 연구팀 및 센터를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소의 임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소장 및 부소장은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⑥ 연구팀장 및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⑦ 임원의 임기는 연구소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11. 8. 24>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소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단, 본부행정부서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8. 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1조(연구진)** ① 연구소에 일반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일반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대우교수, 객원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본인의 소속 단과대학과 관계없이 여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4>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본교 이외에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이 허락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4>

④ 연구보조원은 학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연구원

**제12조(연구원의 조직)** <삭제 2011. 8. 24>

**제13조(연구원 운영위원회)** <삭제 2011. 8. 24>

제 4 장 운 영

**제14조(평가)** ① 연구기관 심사단은 매년 연구소의 업적 및 운영전반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각종 행·재정 지원, 통폐합과 존속 여부의 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11. 8. 24>

②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소 평가를 위해 연구기관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 8. 24>

③ 연구소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방법 및 기준 등은 연구소 평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제출서류)** ① 연구소 사업결과 보고서(회계연도 내 연구비 수혜사항, 연구 활동실적 및 결산

서)를 매년 1월 중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②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월 중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③ 연구소의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 활동실적 등을 관련 부서에서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정)**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② 연구소의 경비는 교외연구비, 본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금, 기타 찬조·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③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일반적인 예·결산 절차를 준용한다.

## 제 5 장 보 칙

**제17조(폐소)** ① 연구소 폐소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연구기관 심사단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1. 연구소 평가결과 2회연속 비활성판정을 받아 당초 설립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신설연구소가 연구소 판정결과 비활성으로 판정받은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켜 폐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연구소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총장이 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소가 자진 해산을 하고자할 시에는 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 해산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8. 24>

③ 연구소가 해산되면 연구소의 모든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본교 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1. 8. 24>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설립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연구소는 본 규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소 규정을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7. 27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설립된 연구소는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8. 24, 2014. 11. 25>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현황**

유형	시설명
대학중점연구소	국방융합과학기술연구소
	기초·융합과학 연구소
	녹색기술연구소
	문화산업연구소
	범죄연구소
	사물인터넷기반기술 연구소
	스마트센서융합기술연구소
	실감미디어 연구소
	융합인문학 연구소
	전파연구센터
	VIA멀티미디어연구소